서 울 특 별 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731-6151 / 전송 733-9535~6

문서번호 시정 01210-618

시행일자 1992.10.21

수신 수신처 참조

선결	국장		지시		
접수	일자 시간	92.10.22 :	결재·공람	과장	
	번호	1765			
처리과					
담당자					

제목 정원조정통보

1. 지방공무원정원규칙의 개정공포에 따라 조정된 정원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니 정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.

가. 정원조정일 : 규칙공포일

첨부 조정표 1부. 끝.

서 울 특 별 시 장

수신처 예산담당관, 인사과, 부녀복지과, 구로부녀복지관장.

정 원 조 정 표

기관명 : 구로부녀복지관 '92년 10 월 27 일

구 분	직 급	현 행	개 정	증 감	증 감 내 역
계		1	1	·	구로부녀복지관장 직급상향
일반직	행정 4급		1	1	
	행정 5급	1		△ 1	

서 울 특 별 시

우 100-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31 /전화(02)731-6286 /전송(02)731-6689

문서번호 의약 01110-4961
시행일자 '92.11. 3.

선결	과장		지시	
접	일자 시간	92. 11.4 :	결재	부녀복지국장
수	번호	1871		보건위생계장
처리과			공람	보건사업계장
담당자				

(경 유)
수 신 수신처참조
참 조

제 목 의료관계 공무원(의무직. 전문직의사) 임용 및 운영개선

1. 시방침 988(92. 11.3)와 관련임.

2. 대호와관련 의료관계공무원(의무직.전문직의사)임용 및 운영개선방안을 별첨과같이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 부:의료관계공무원(의무직.전문직의사) 임용 및 운영개선 방침서 사본 1부. 끝.

의 의약과장 강종희 장

수신처:인사과장,보건위생과장,부녀복지과장.

醫療關係 公務員(醫務職, 專門職醫師) 任用 및 運營改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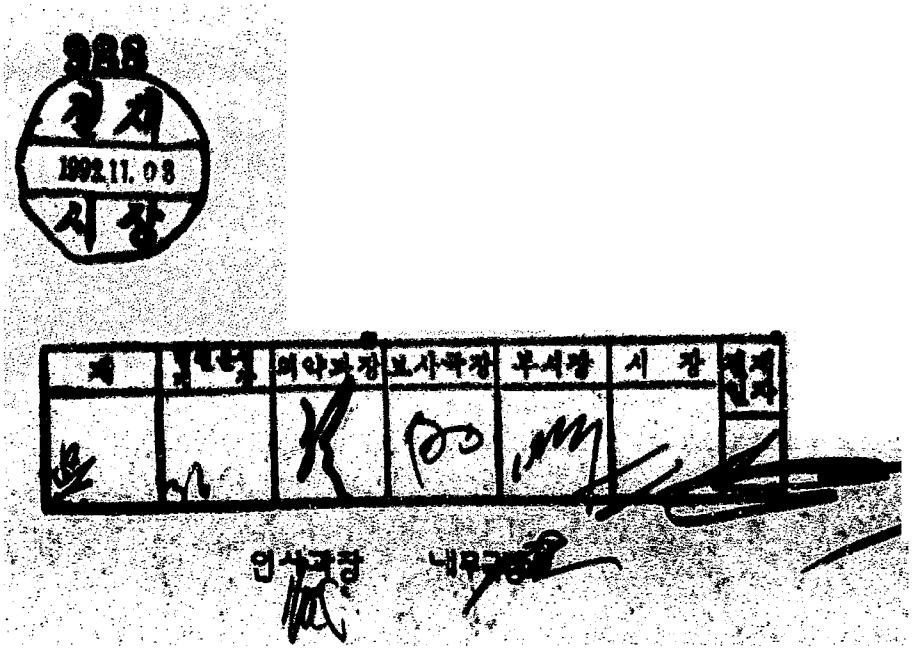

保 健 社 會 局

FIAX 737-4655

醫療關係 公務員(醫務職, 專門職醫師)任用 및 運營改善

1. 醫務職公務員

[檢 討 背 景]

○ 醫務職公務員 中에서 相當數가 4年以內 停年到來者(45名中 21名)로 이들의 停年에 따른 向後 任用計劃等을 檢討, 施行하므로서 組織의 安定感 鼓吹

○ 特히 保健所長은 自治區의 保健業務를 總括하는 機關長이나 現 22個區中 15個區(68%)의 所長이 女性으로 組織運營 活力 未洽

○ 또한 保健所長 缺員時 醫務職 課長(男 4名, 女 19名)中에서 任用할 境遇 女性 補職比率의 增加가 豫想

□ 現 況(保健所)

○ 補職現況

區 分	計	性 別		任用方法		資 格 別		勤務期間別		
		男	女	昇進	新採用	專門醫	一般醫	5年未滿	5~10年	11年以上
계	45	11 (24%)	34 (76%)	14	31	19	26	9	9	27
保健 所長	22	7	15	14	8	7	15	3	3	16
5級 (課長)	23	4	19		23	12	11	6	6	11

※ 5級補職(23名) : 醫藥課長 20名, 保健指導課長 2名, 地域保健課長 1名

○ 年 齡 別

區 分	50歲以下	51~55歲	56歲 以 上						
			小 計	56	57	58	59	60	61
계	11	8	26	2	3	9	6	3	3
保健 所長	3	5	14		2	4	4	3	1
5급 (課長)	8	3	12	2	1	5	2		2

□ 停年延長 檢討

關係規程(地方公務員法 第66條, 同法施行令 第41條의2)

. 停 年 : 保健所長 65歲까지, 醫務職課長(5級) 64歲까지 延長可能

※機關의 人力需給事情, 職務의 特殊性및 能力과 健康狀態等 考慮 延長許容

○ 年度別 停年到來 人員 : 4年以內 總 45名中 21名 (47%)

'92年	'93年	'94年	'95年
3名(4級1, 5級2)	3名(4級)	6名(4級4, 5級2)	9名(4級4, 5級5)

○ 措置意見 : 停年延長 不可

. 停年延長은 長期間 蓄積된 經驗을 活用할 수 있는 肯定的인 面이 있으나

. 우리市의 境遇 他 市.道와 달리 人力充員에 별다른 問題가 없으며

. 有能하고 젊은층의 새로운 知識 및 技術導入으로 組織의 活力賦與

□ 向後 任用方案

○ 細部 任用基準

	醫務職課長(5級)	保 健 所 長
. 年 齡	: 35歲以上 50歲以下	35歲以上 55歲以下
. 經 歷	: 專門醫, 行政經歷者 優待	左 同
. 候 補 者	: 專門職 醫師中 優秀者	醫務職 5級 中에서 採用原則

專門職醫師 중 優秀者 選拔 → 醫務職 5級으로 採用 (行政經歷 蓄積) → 保健所長으로 採 用

○ 任用者 選拔 : 保健所長 및 5級 (課長) 共히 男子 比重을 높여 나가되

. 第 1 案 : 男.女 構成比가 均衡을 維持할때까지 男子로만 採用

. 第 2 案 : 男.女 順次的으로 任用하여 漸進的으로 男子 比重을 늘임

措置意見 : 第 1 案 으로 推進하되 遞格者 確保困難等 特別한 事由가 있는 境遇에 한하여 女子로 採用

2. 專門職 公務員

○ 地方專門職公務員(醫師)을 適正年齡의 診療科目 資格證 所持者로 充員하여
○ 患者診療의 適正性과 實效性을 提高하여 良質의 醫療서비스 提供

□ 採用根據

○ 地方專門職 規程 (大統領令 第12253號)
○ 서울特別市 地方專門職公務員 人事管理規則 (第12257號)
○ 自治區 地方專門職公務員 管理規則

※ 專門職의 應試年齡, 停年等 規程없음
專門醫 資格所持者는 "가"級, 一般醫는 "나"級으로 採用
採用期間은 3年의 範圍內에서 採用, 延長可能

□ 現 況

○ 專門職 醫師

區 分	計	等級別		性		年齡別			勤務 年數別		
		가級	나級	男	女	30歲以下	31~59歲	60歲以上	1年未滿	1~2年	3年以上
計	168	70	98	25 (15%)	143 (85%)	49	104	15	53	43	72
保健所	113	31	82	10	103	43	59	11	41	28	44
市立病院	55	39	16	15	40	6	45	4	12	15	28

○ 保健所 專門醫 資格證 所持者 (가級) : 31名

放射線科	家庭醫學科	小兒科	產婦人科	耳鼻咽喉科	臨床病理科	豫防醫學科	痲醉科
8名	9	4	3	1	2	2	2

※ 豫算上의 定員 47名 (保健所別 1~4名)

□ 運營實態 및 問題點

○ 採用年齡 및 停年 : 法規上 明示規程 없음

. 採用은 年齡制限 없이 醫師資格證 所持者면 누구나 可能

→ 採用者가 高齡이거나 대부분 女性으로 出產, 家事等 診療支障 招來

. 停年은 64歲까지 可能 ('89.6.26 政策會議時 決定)

→ 高齡者는 診療意慾 부족으로 形式的, 惰性的으로 診療

○ 保健所 專門醫의 診療科目

. 地域特性을 勘案 必要한 診療科目 資格所持 專門醫로 充員해야 하나 細部 採用基準 없이 來所患者 類型을 考慮하지 않고 採用(痲醉科, 耳鼻咽喉科等)

□ 改善方案

○ 採用.停年 및 性別

		現 行		改 善
. 新規採用年齡	:	制限없음	→	35歲以上 45歲以下
. 停 年	:	64歲까지	→	61歲까지 原則
. 性 別	:	制限없음	→	男.女構成比 均衡時까지 男子採用原則

○ 保健所 專門醫(가級)를 採用할 수 있는 診療科目 指定

《 現 行 》		《 改 善 》
診療科目에 關係없이 專門醫 資格證 所持者면 "가"級으로 採用	→	地域實情을 勘案 採用하되 診療科目을 限定 (6個科) → 內科, 家庭醫學科, 放射線科 結核科, 產婦人科, 豫防醫學科

※ 他 專門醫 資格所持者는 現 契約期間 滿了後 "가"級으로 再契約 不可

→ 現 "가"級 31名中 9名

但 同一 保健所의 同一診療科目 專門醫는 2인以上 採用不可

ㄱ 의무직 공무원 정년퇴직 예정자 명단 (4년이내)

연번	소속	직위	직명	성명	생년월일	퇴직일자
1	중구	보건지도과장	의무기정	배승길	31. 9. 4	92.12.31
2	성동구	보건소장	지방의무기정	윤해성	31. 8.20	〃
3	강동구	의약과장	지방의무기좌	조화숙	31. 7.20	〃
4	종로구	보건소장	지방의무기정	조철행	32. 7.20	93.12.31
5	서대문구	보건소장	지방의무기정	서청숙	32.10. 1	〃
6	마포구	보건소장	지방의무기정	맹시선	32.12. 3	〃
7	중랑구	보건소장	지방의무기정	이용근	33. 1.23	94. 6.30
8	강서구	보건소장	지방의무기정	배용석	33. 6.18	〃
9	구로구	의약과장	지방의무기좌	최은주	33. 1. 7	〃
10	관악구	보건소장	지방의무기정	이용구	33. 7. 1	94.12.31
11	송파구	보건소장	지방의무기정	권정숙	33.10.28	〃
12	은평구	의약과장	지방의무기좌	나문희	33.11.16	〃
13	노원구	보건소장	지방의무기정	박노진	34. 1.10	95. 6.30
14	은평구	보건소장	지방의무기좌	양일현	34. 8.15	95.12.31
15	종로구	의약과장	지방의무기좌	김영숙	34. 8.27	〃
16	동대문구	보건소장	지방의무기정	이은호	34. 8.28	〃
17	성북구	의약과장	지방의무기좌	강순옥	34. 8.27	〃
18	도봉구	의약과장	지방의무기좌	윤해숙	34. 9. 3	〃
19	마포구	의약과장	지방의무기좌	김재복	34. 9.14	〃
20	구로구	보건소장	지방의무기정	지우창	34. 7. 9	〃
21	중랑구	의약과장	지방의무기좌	이갑숙	34.11. 6	〃

□ 전문직 공무원 현황 (60세이상)

연 번	소 속	직 위	성 명	생년월일	계약일자	비 고
1	동작구보건소	지방전문직의사 가 급	송 건 해	28. 2.14	92.7. ~ 93.7	64세 (1명)
2	용산구보건소	나 급	김 명 수	29. 5. 4	90. 7. 1~ 93. 6.30	63세 (3명)
3	도봉구보건소	가 급	김 영 혜	29.12. 3	91. 1. 1~ 93.12.31	
4	서대문 병원	나 급	성 나 원	29. 9. 2	91. 1. 1~ 93.12.31	
5	중 구보건소	가 급	유 길 해	31.12.10	91. 1. 1~ 92.12.31	61세 (5명)
6	중 구보건소	나 급	김 정 수	31. 7.22	91.11.20~ 92.11.19	
7	용산구보건소	나 급	박 인 규	31. 2.14	92. 7. 1~ 93. 6.30	
8	용산구보건소	나 급	변 순 희	31.11.17	92. 3.21~ 93. 3.20	
9	서대문 병원	나 급	최 용 욱	31. 1.25	91. 1. 1~ 92. 6.30	
10	동대문보건소	가 급	임 정 택	32.10.14	91. 5. 1~ 94. 4.30	60세 (5명)
11	은평구보건소	가 급	[illegible]	32.11.10	91. 1. 1~ 92.12.31	
12	영등포보건소	가 급	김 기 복	32.12.25	90. 9.20~ 93. 9.19	
13	아 동 병 원	나 급	엄 세 정	32. 3. 2	92. 7.13~ 93. 7.12	
14	〃	나 급	조 선 숙	32. 3.29	90. 5.13~ 93. 5.20	
계	보건소 10명	시립병원 4명		"가" 급 6명,	"나" 급 8명	

醫務職 및 專門職 採用 體系圖

(資格證 所持者 任用)

醫 務 職

人事課 → (試驗要求) → 公務員敎育院 → (合格者決定 通報) → 人事課

採用具備書類 接受 (醫療課, 保健所等)

面接試驗

身元照會. 任用

※ 任用方法 : 特採

專 門 職

□ 市立病院(市長 任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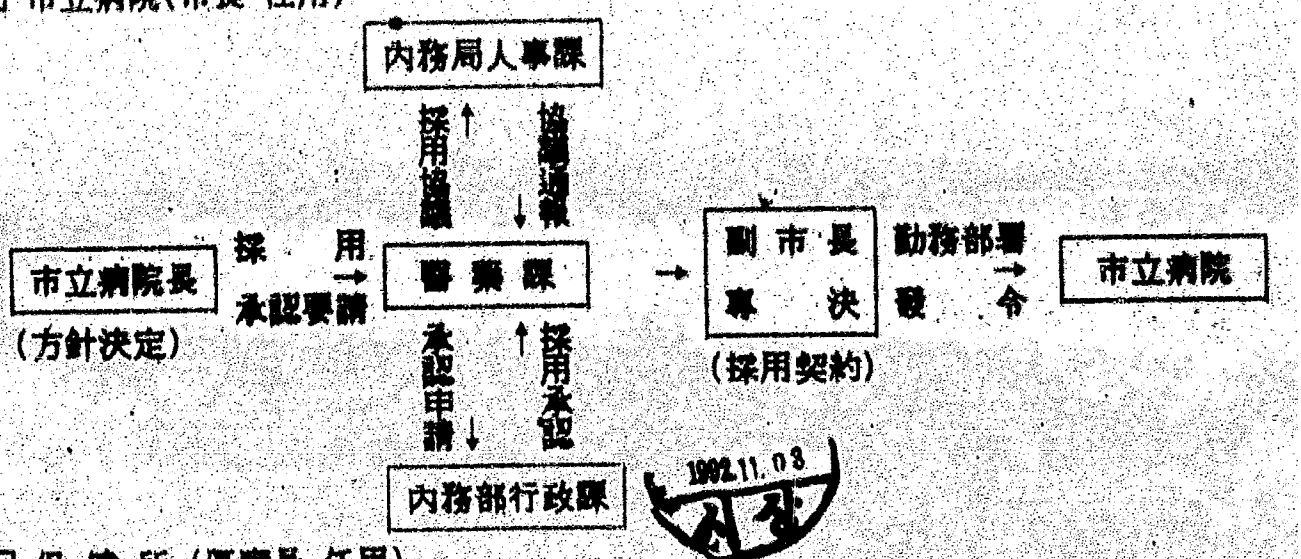

□ 保 健 所 (區廳長 任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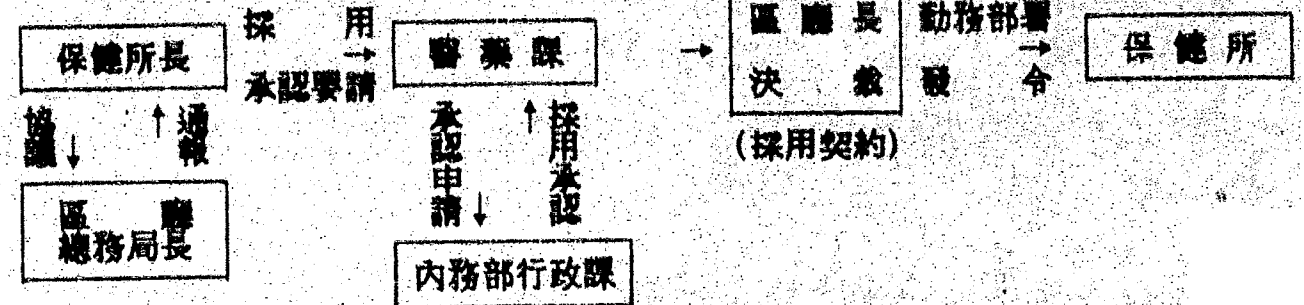

※ 모 집

○ 特 採 : 任用部署의 長이 選拔 承認要請 → 醫藥課에서 措置

○ 公 採 : 同時 缺員이 10名 以上일때 醫藥課에서 公採

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

우100-744 서울 중구 을지로1가 63번지 / 전화 (02)771-0611~9 /전송 7771-0868

문서번호 사업 31823-958

시행일자 1992.10. 16 .

수신 수신처 참조

선결	과장		지시		
접수	일자 시간	92.10.17 :	결재·공람	부녀행정계장	
	번호	3084		공원매립계장	
처리과				보호사업계장	
담당자					

제목 "공공분야의 폐기물 재활용촉진을 위한 지침"통보

1. 공공분야에서 폐기물의 감량화와 분리수거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재활용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사용하며, 각급 행정기관간 효율적인 협조 및 역할 분담체계를 확립,시행함으로써 폐기물감량화 및 재활용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고자 별첨 국무총리훈령이 제정되었기 통보하오니

2. 우리시 산하 각급 기관은 물론 산하기관및 관련 민간단체도 함께 참여하여 폐기물 재활용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국무총리 훈령 제264호 1 부. 끝.

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장

수신처 서과 1-73, 서본부 1-5(주무과), 서구 1-22(총무과), 서공 1-5

사업소(1-15), 시경찰청, 시의과 1-3.

국무총리훈령 제264호

공공분야의폐기물재활용촉진을위한지침

공공분야의폐기물재활용촉진을위한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. 목 적

공공분야에서 폐기물의 감량화와 분리수집을 모범적으로 실시하고, 폐기물재활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.사용하며, 기관간의 효율적인 협조와 역할분담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, 이를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함

2. 기본방침

◇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(이하 "각급행정기관"이라한다) 자체 발생폐기물의 감량화와 폐기물재활용제품의 우선 구매.사용

◇ 각급행정기관이 우선 실천하고 점차 정부투자기관등 공공기관.단체와 민간부문으로 확산되도록 권장.유도

◇ 폐기물재활용촉진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각급행정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조체제구축

3. 적용대상 및 추진체계

가. 적용대상기관

○ 각급행정기관(국공립학교.군부대포함)

나. 추진체계

○ 중앙행정기관 : 환경처에서 총괄

○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및 지방행정기관등 : 주무중앙행정기관에서 총괄

4. 각급행정기관 조치사항

가. 재활용제품 우선 구매·사용

○ 재활용제품사용이 가능한 경우 가급적(가격 및 질적측면 고려) 재활용제품 우선구입 사용

- 사무용지류 : 복사지, 메모지, 봉투, 공책, 회입표지, 기타사무용지
- 인쇄물 용지류 : 정기간행물, 홍보용간행물, 회의자료, 각종지침서등
- 기타 : 화장지, 플라스틱제품류, 정제윤활유 및 재생이 용이한 종이테이프등

○ 각급행정기관의 매점에 재활용제품 판매장소를 설치·운영하여 재활용제품판매 및 사용을 촉진

나. 폐기물발생 감량화

○ 각종 보고서, 인쇄물등은 양면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"용지보관함"을 비치하여 초안작성용지, 메모용지, 복사용지 등으로 재활용

○ 문서, 자료의 복사시 필요이상의 과다한 복사 자제

○ 대형행정봉투의 재사용, 볼펜심 교환사용, 1회용품사용 가급적 억제

다. 폐기물의 분리수거 실천

○ 각급행정기관은 자체발생폐기물중 재활용가능한 폐기물을 최대한 분리수집하여 재활용

○ 사무실.구내매점.식당등 재활용폐기물발생원별로 적정한 분리수집 보관용기 비치

※ 사무실의 경우 종이는 신문지.종이상자류(판지).백상지 등으로 구분하여 분리.수집하고, 비닐코팅된 종이는 쓰레기로 배출

○ 각급행정기관별로 분리수집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

라. 공공기관, 민간단체등에 대하여 권장 및 지원

○ 각급행정기관은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단체등에 대하여 본지침 실천을 적극 권장

○ 민간부문에 대한 자율실천 유도

- 민간단체의 폐기물재활용 실천을 위해 시설.장비등 최대한 지원

(예) 민간단체의 알뜰시장, 벼룩시장 개설에 대하여 시.군.구의 청사안 공터, 각급학교의 운동장 및 강당등의 장소를 공휴일에 제공하는 방법등

○ 전국민 실천을 위한 범국민운동 확산

- 폐기물 분리수거 및 감량화.재활용의 필요성, 기대효과 및 실천 방안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.홍보실시

- 각급행정기관별로 자체 추진상황 및 성과에 대하여 정기적 평가 및 대외 발표

5. 행정사항 기타

가. 각급행정기관은 본지침을 참고, 기관별 실정에 맞도록 자체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.시행

나. 각 중앙행정기관은 본지침에 대한 교육.홍보를 실시하고 소속기관 등에 추진상황을 지도.점검

다. 중앙기관 합동점검 평가 및 수범사례 발굴 확산

○ 유관기관(환경처, 내무부, 총무처등) 합동점검반 편성, 년1회 점검

○ 점검결과에 따라 미비점 보완, 수범사례 발굴 및 유공자 표창

* 주요 점검사항

. 폐기물의 재활용 및 판매실적

. 교육 및 홍보실적

. 폐기물 분리보관의 적정성

. 기타 관련사항

라 추진상황 통보 및 보고

○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이행실적을 년2회 환경처장관에게 통보(상반기 : 8월30까지, 하반기 : 다음년도 2월말까지)

○ 환경처장관은 각급행정기관의 이행실적을 종합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

마. 관계기관 협조

○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환경처장관이 재활용촉진을 위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

○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기준등을 제정할 때는 환경처장관과 사전협의